

① 유연근무제 활용

○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 및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.

※ 특히,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, 휴가 등 적극 활용

-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다.

◆ 유연근무제 주요 내용 ◆

- ▶ (시차출퇴근제)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
- ▶ (재택근무제)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
- ▶ (원격근무제) 주거지,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

② 휴가 및 휴업 관리

○ 「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」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·격리되는 경우, 국가에서 유급휴가비* 또는 생활지원비**를 지원하고 있으며,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.(단, 확진자 격리의무 미부과시 지원 중단)

구분	*유급휴가비	**생활지원비
지원대상	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	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·격리자 *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에 한함
지원수준	개인별 일급 기준 (1일 45천원 상한, 5일분까지만 지원)	정액 지원 (10만원(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))
신청처	국민연금공단 지사	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(또는 정부24의 '보조금24')

○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입원·격리되는 경우가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*을 지급하여야 한다.

*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,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% 이상(평균임금의 70%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) 수당 지급 필요(단,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)

- 또한,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유급휴가*,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* ①단체협약·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, ②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,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(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)

③ 가족돌봄 휴가

○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* 자녀 백신접종의 경우도 자녀의 양육에 해당되므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하고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

※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(신청기한: 22.3.21~22.12.16)